



# 개인적 법익 침해

제 1 장	사생활 침해	18
제 2 장	피의자 신원공개	29
제 3 장	목격자 신원공개	31
제 4 장	성폭력 피해자 피해상태 상세묘사	36
제 5 장	정신질환자 신원공개	37
제 6 장	북한이탈주민 신원공개	39

# 제 1 장 사생활 침해

사례. 1

의결번호	제2017-165호
매 체 명	인터넷 보건복지신문
보도일시 및 위치	2017년 2월 5일 종합뉴스
기사제목	인천서부소방서, 작업 중 팔 절단 60대 근로자 긴급 후송

## 1. 보도내용

「인천서부소방서, 작업 중 팔 절단 60대 근로자 긴급 후송」 제하의 사진



※ 원 보도에는 모자이크 없이 게재되었으나, 법익침해 방지를 위해 모자이크 처리함

「인천서부소방서(서장 김준태)는 지난 2일 오전 12시20분경 인천 서구 ○○동의 한 목재 공장에서 작업을 하던 문 모씨(○, ○○세)의 좌측 팔이 분쇄 기계 사이로 빨려 들어가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다.

문 모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검단119안전센터 구급대원에 의해 구조된 뒤 응급 처치를 받으며 인근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이하 생략)

## 2. 권고사항

언론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그 밖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소방서의 구조 활동에 관하여 보도하면서 응급환자인 피구조자의 초상을 공개하였다. 이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는 헌법 제17조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근거한 인격권을 침해한 기사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사례. 2

의결번호	제2017-199호
매 체 명	일요신문
보도일시 및 위치	2017년 2월 12일 43면
기사제목	“상속재산 손실 이모보다 많았을 것”

### 1. 보도내용

‘최순실·박근혜 게이트’ 핵심 인물로 구속 수감 중인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38·개명 전 이름 장유진)는 “영화 속에서나 볼 법한 갑부의 삶”을 살았다는 증언이 나왔다. ‘비즈한국’은 과거 장 씨와 결혼까지 준비했다가 파혼한 A 씨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그간의 스토리를 들을 수 있었다. (중략)

‘신데렐라’ 같은 삶이 가능했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파혼한 결정적인 이유는 장 씨의 약물 과다 때문이었다고 한다. 장 씨는 ‘졸피뎴’ 과다 복용자로, 몽유병과 같은 중증 부작용을 앓아왔다는 것. 졸피뎴은 불면증 치료용으로 쓰이는 수면 유도제로, 과다 및 장기간 복용 시 환각, 기억 상실, 몽유병 등의 부작용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A 씨는 “유진이(장시호)는 잠을 자다가도 불쑥 일어나 운전을 해서 시내에 나가곤 했다”면서 “술을 마시고 돌아와 다시 잠이 든 적이 있다. 다음날 아침이면 전날 밤 한 일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다. 졸피뎴 과다 복용에 따른 몽유병 증세였다”고 설명했다. (중략)

2014년 말 장 씨와 결혼할 계획이었던 A 씨는 장 씨의 졸피뎴 과다 복용에 따른 몽유병 증세 악화에 파혼을 결심했다고 한다. A 씨는 “정상적인 부부생활이 힘들 것으로 판단돼 장 씨에게 파혼을 통보했다”며 “결혼이 임박할수록 장 씨가 예비 배우자를 아랫사람처럼 부려먹으려는 행동도 자주 보였다. 부자로 만들어줄 테니 잘 하라는 식이었다”고 말했다. (이하 생략)

## 2. 권고사항

언론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그 밖의 인격권을 침해 하여서는 아니 된다.

##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사건 관련 인물인 장시호의 확인되지 않은 파혼 경위와 병력을 상세히 공개하였다. 비록 그가 사회적인 관심을 받는 인물일지라도, 그의 파혼 경위와 병력을 공개한 것은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는 헌법 제17조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근거한 인격권을 침해한 기사로 판단된다.

이에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사례. 3

의결번호	제2017-210호
매 체 명	인터넷 시사뉴스
보도일시 및 위치	2017년 3월 9일자 사회면
기사제목	고속도로 갓길 배회 할머니 구한 경찰관 미담 화제

## 1. 보도내용

「(전략) 양 경위는 “지난 5일 오후 3시경 경부고속도로 신탄진 방향 갓길에서 위험하게 혼자 계시는 할머니(김 모氏, ○○세)를 발견했다. 다가가서 물어보니 10여 년 전 며느리와 손녀를 잃은 충격과 노환으로 인해 정신이 깜박 깜박해 딸의 집에 갔다 돌아오는 길에 길을 잃고 집을 못 찾아 2시간 가량을 울며 헤매고 있었다”고 말했다.

양 경위는 이어 “고속도로 갓길까지 올라와 위험하게 걸어가는 것을 방치해 둘 수 없어 할머니께 살고 있는 집을 여쭙어본바 ‘○○하이츠 ○○○호’ 라는 주소 외에는 전혀 모르는 상태였다” 라고 이날 상황을 설명했다. (이하 생략)

## 2. 권고사항

언론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그 밖의 인격권을 침해 하여서는 아니 된다.

##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경찰관의 구조활동에 관하여 보도하면서 피구조자의 주택 상세 주소 및 성, 나이 등 신원정보를 공개하였다. 이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는 헌법 제17조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근거한 인격권을 침해한 기사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사례. 4

의결번호	제2017-672호
매 체 명	전민일보
보도일시 및 위치	전민일보 2017년 8월 28일자 14면
기사제목	○○○동 저장강박증 독거노인 집 대청소 ‘구슬땀’

## 1. 보도내용

「(전략) 저장강박증으로 집안과 복도에 쓰레기를 쌓아놓고 살고 있는 독거노인 주택(이○, ○·○○세)을 방문해 집안 대청소 봉사활동을 펼쳤다. (중략)

이○ 어르신은 지적장애가 있으며 폐지를 주어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었고, 8년 전 남편 사망 후 저장강박증을 앓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 (이하 생략)」

## 2. 권고사항

언론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그 밖의 인격권을 침해 하여서는 아니 된다.

##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지역 사회의 봉사 활동에 대해 보도하면서 수혜자인 독거노인의 질환 및 장애 유형과 함께 그의 성명, 성별, 나이 등을 공개하여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다. 이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는 헌법 제17조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근거한 인격권을 침해한 기사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사례. 5

의결번호	제2017-847호
매 체 명	TV조선
보도일시 및 위치	① 2017년 11월 7일 21:00 <종합뉴스9> 프로그램 ② 2017년 11월 8일 22:00 <탐사보도 세븐>12회 프로그램 외 9개 보도
기사제목	① [단독] 휠체어에 앉아 TV 보는 이건희 회장 ② '이건희 회장 살아있다 - 삼성병원 20층 관찰보고 외 9개 보도

## 1. 보도내용

- ① 「[단독] 휠체어에 앉아 TV보는 이건희 회장」 제하의 사진

**탐사기획** 종합뉴스9

## [단독] TV 영화 보는 이건희 회장...3년 반만에 모습 공개

김 기자 ▾

등록 2017.11.06 21:03 / 수정 2017.11.06 22:18



「(전략) 병실을 찬찬히 살펴보니 이 회장이 휠체어에 앉아 있습니다. 두 달간 취재하면서 처음 보는 광경이었습니다. 침대에 비스듬히 기대어 앉아 있던 모습이 아닌, 의료진 부족없이 혼자 휠체어에 앉아 있는 모습이 분명합니다.

강○○ / 신경외과 전문의

“뭔가 자기 자세를 유지하려고 하는 듯한 모습이 의식이 있을 것만 같은데 느낌이”  
이 회장 병상 주변에는 인공호흡기도 찾아 볼 수 없었습니다.

이○○ / 신경외과 전문의

”인공호흡기가 없어요. 자가 호흡이 있다는 거죠” (이하 생략)

## ② 「이건희 회장 살아있다-삼성병원 20층 관찰보고」제하의 영상

「(전략) 내레이션 : 흐릿하긴 하나 인공호흡기 없이 숨을 쉬는 모습입니다.

취재진 : “화면이 딱 보이잖아”, “보여요 완전 보여요”

내레이션 : 자세히 보니 팔과 다리에 하얀 물체가 보입니다. 팔 사이에 쿠션을 받쳐 놓은 겁니다. 다리를 둘러싸고 있는 것은 뭘까요. 확인해보니 욕창 방지용 마사지기로 밝혀졌습니다.

취재진 : “링거액 확인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의사로 보이는 남자가 확인하고 있는 것 같고”

“확인하고 있어요. 하나 하나”

내레이션 : 비교적 평온한 모습. 그런데 한참을 지켜봐도 별 움직임은 없습니다. 관찰한 달째. 특별한 움직임이 처음 포착됩니다. 의료진이 주변을 정리하는 동안 이건희 회장의 팔이 움직인 겁니다. 오른쪽 팔을 올리는 모습, 보이십니까? 의사들은 이 모습을 어떻게 해석할까. 영상을 보여주고 소견을 물었습니다.

이○○ 신경외과 전문의 : 인공호흡기는 안 달고 계시고 자가 호흡이고. 식물인간인 경우에 외부 자극에 대해서 보이는 자극은 무조건 반사입니다. 본인이 그것을

이해하고 반응을 보이는 경우는 대부분 드물고요. 무조건적인 반사라고 해서 무의미한 반응이라고 보는 게 제일 맞을 거예요.

한○○ 신경과 전문의 : 식물인간에서 전 단계인 것 같고요. 혼자 전혀 못 움직이고 계시고 이 정도 경련은 식물인간 상태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거든요. 일반인이 이런 상태로는 오래 유지할 수 없습니다. 금방 펴죠.

내레이션 : 팔의 움직임으로 의식이 있느냐 없느냐 의사들의 소견이 엇갈립니다.

강○○ 신경외과 전문의 : 사실 이거 한 번으로 경기라하기도 힘들거든요. 그리고 강직이나 경기가 오면 그대로 두겠어요. 이렇게 치료를 잘 받는 사람일? (이하 생략)

## 2. 권고사항

언론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그 밖의 인격권을 침해 하여서는 아니 된다.

## 3. 권고이유

위 보도는 유명 대기업 회장의 병상 모습을 공개하고, 원거리에서 촬영된 영상만으로 그의 건강 상태를 분석하여 보도하였다. 비록 그가 사회적으로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는 기업인으로서 공적 인물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입원 치료 중인 환자의 병상 모습과 건강 상태는 인간으로서 보호받아야 할 기본적인 사적 영역에 해당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는 헌법 제17조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근거한 인격권을 침해한 기사로 판단된다.

이에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사례. 6

의결번호	제2017-851호
매 체 명	연합뉴스
보도일시 및 위치	2017년 10월 7일자 포토면
기사제목	괌 경찰이 공개한 차량 아이 방치 변호사·판사 부부

1. 보도내용

「괌 경찰이 공개한 차량 아이 방치 변호사·판사 부부」 제하의 사진



※ 원 보도에는 부부의 영문 성명이 모자이크 없이 게재되었으나, 법익침해 방지를 위해 모자이크 처리함

## 2. 권고사항

언론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그 밖의 인격권을 침해 하여서는 아니 된다.

##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미국에서 차량 내 아동 방치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후 풀려난 부부의 성명을 공개하였다. 이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는 헌법 제17조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근거한 인격권을 침해한 기사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제 2 장 | 피의자 신원공개

### 사례. 7

의결번호	제2017-24호
매 체 명	허핑턴포스트코리아
보도일시 및 위치	2016년 12월 27일자 사회면
기사제목	‘기내난동’ 임○○은 이달 말과 1월에도 대한항공을 예약했지만 비행기에 타지 못하게 됐다

### 1. 보도내용

「‘기내난동’ 임○○은 이달 말과 1월에도 대한항공을 예약했지만 비행기에 타지 못하게 됐다」 제하의 사진

### ‘기내난동’ 임○○은 이달 말과 1월에도 대한항공을 예약했지만 비행기에 타지 못하게 됐다

연합뉴스/허핑턴포스트코리아

게시일: 2016년 12월 27일 17시 08분 KST | 업데이트일: 2016년 12월 27일 17시 12분 KST



※ 원 보도에는 모자이크 없이 게재되었으나, 법익침해 방지를 위해 모자이크 처리함

「(전략) 지 사장은 지난 20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출발해 인천으로 향하던 여객기 프레스티지석에서 만취해 폭력을 행사한 임○○(○○)씨에게 탑승 거부 고지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하 생략)」

## 2. 권고사항

언론은 형사사건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을 위배하여 그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도록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항공기 내 폭행사건 피의자의 초상 및 성명을 공개하여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다.

언론이 피의자의 신원을 공개하는 것은 헌법 제27조제4항에 근거한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3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사례. 8

의결번호	제2017-213호
매 체 명	포커스뉴스
보도일시 및 위치	2017년 3월 5일자 사회면
기사제목	한국서 행방불명 대만 여성, 교도소에... '보이스피싱' 혐의로 구속

## 1. 보도내용

「한국서 행방불명 대만 여성, 교도소에... '보이스피싱' 혐의로 구속」 제하의 사진

### 한국서 행방불명 대만 여성, 교도소에... '보이스피싱' 혐의로 구속

가족에게 알리지 말라고 당부해 '실종 해프닝'



※ 원 보도에는 모자이크 없이 게재되었으나, 법익침해 방지를 위해 모자이크 처리함

「(전략)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달 14일 한국에 입국했다가 17일 어머니와의 연락을 마지막으로 보름째 연락이 되지 않는 대만인 지양 ○(○○·○)씨가 보이스피싱 혐의로 경기북부지방경찰청에 구속됐다고 5일 밝혔다. (이하 생략)」

## 2. 권고사항

언론은 형사사건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을 위배하여 그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도록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실종사건 수사 결과, 실종이 아닌 범죄 혐의로 교도소에 수감 중인 것으로 밝혀진 피의자의 초상 및 성명, 나이 등 신원 정보를 공개하여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다.

언론이 피의자의 신원을 공개하는 것은 헌법 제27조제4항에 근거한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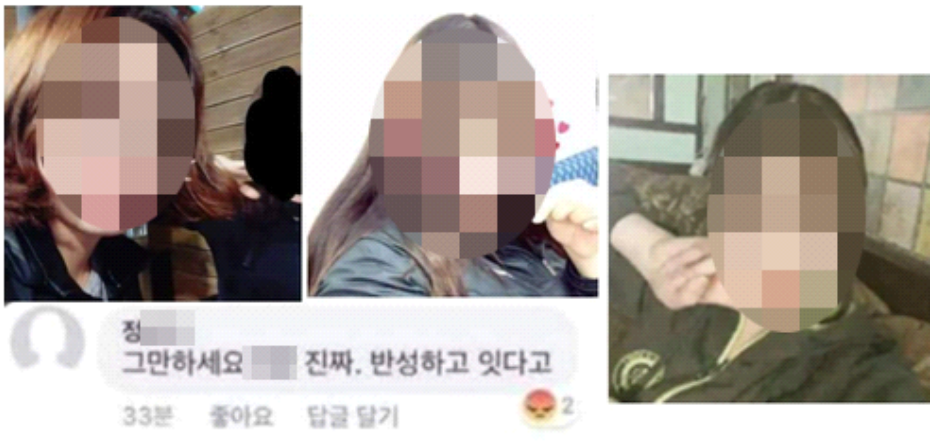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3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사례. 9

의결번호	제2017-757호
매 체 명	연예스포츠방송
보도일시 및 위치	2017년 9월 5일자 핫이슈면
기사제목	끔찍?잔혹?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 1. 보도내용

「끔찍?잔혹?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제하의 사진



※ 원 보도에는 초상 부분은 약하게 모자이크 처리되고 성명 및 욕설은 모자이크 없이 게재되었으나, 법익 침해 방지를 위해 모자이크 처리함.

「(전략) 한편, SNS에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가해자로 추정되는 학생이 적반하장격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대중들의 분노를 키우고 있다. 온라인에서 가해자로 추정 지목된 학생은 페이스북을 통해 사진을 내려달라고 부탁 하다가 뜻대로 되지 않자 욕을 하며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다. 이 학생은 처음에는 “제가 잘못했다. 욕하지

말아달라. 그때는 정신상태가 온전하지 못했다. 다시는 이런 일 안 발생하게 할테니 사진 좀 내려달라”고 썼다. 이어 “제발 재 친구들 들먹거리지 말고 사진 좀 다 내려달라. 진짜 죄송하다. 용서 안될거라는거 알고 있지만 앞으로 정말 다시는 안그러겠다. 부탁드립니다”는 글을 올렸다.

그러나 비난이 계속되자 분노를 삭이지 못하고 “아 정말 진짜 미쳤다” “그만 하세요 XX. 진짜 반성하고 있다고”라고 화를 냈다. 이 글은 캡처 형태로 여러 커뮤니티와 SNS로 퍼지고 있다. 이번사건은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으로 세간에 알려지면서 대중들을 분노케 하고 있다. (이하 생략)

## 2. 권고사항

언론은 형사사건의 피의자(혐의자, 용의자 포함) 또는 피고인이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을 위배하여 그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도록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언론은 소년보호사건에 관하여 사건 당사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내용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폭행 혐의를 받는 미성년 피의자의 성명을 공개하여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다. 언론이 미성년 피의자의 신원을 공개하는 것은 헌법 제27조제4항에 근거한 무죄 추정의 원칙 및 소년법 제68조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3조제1항 및 제6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제 3 장 | 목격자 신원공개

### 사례. 10

의결번호	제2017-545호
매 체 명	동아일보
보도일시 및 위치	2017년 7월 4일자 A12면
기사제목	“웬지 째째”... 두 남녀 은신 ○○ 주변 밤새 탐문한 ‘형사의 족’

### 1. 보도내용

「경남 창원 골프연습장 40대 주부 납치 살해사건의 피의자 심천우(31)와 강정임(36·여)이 3일 경찰에 붙잡혔다. (중략)

3일 오전 10시 10분경 서울 중랑경찰서 강력팀 형사 6명이 서울 중랑구 ○○○에 도착했다. 40년간량 된 낡은 ○○○다. (중략)

○○ ○○ A씨(○○·○)는 두 사람의 행동이 이상했다. 2일 오후 9시경 폭우가 내리는 가운데 두 사람이 나란히 외출하는 걸 봤다. A씨는 “수상한 사람이 있다”며 112에 신고했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살인범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이하 생략)

### 2. 권고사항

언론은 특정강력범죄사건의 피해자 또는 제보자, 신고자, 고소인, 고발인, 참고인, 증인 등에 대해 그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도록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특정강력범죄(살인) 피의자가 그가 묵었던 ○○업소 ○○의 신고로 검거 되었다는 사실과 신고자의 성별, 나이, 운영 업소의 상호 이니셜 등 인적 사항을 공개하였다.

이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 및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8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보복 범죄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3조제2항을 위반하였으므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제 4 장

# 성폭력 피해자 피해상태 상세묘사

### 사례. 11

의결번호	제2017-429호
매 체 명	더팩트
보도일시 및 위치	2017년 6월 7일 사회면
기사제목	[영상] 최○○○○○○○○ 회장 소름돋는 호텔 목격담 “도와주세요”

### 1. 보도내용

「(전략) 전국에 1000여 개의 체인점을 가지고 있는 ‘○○○ ○○○ ○○’ 최○○ 회장이 20대 여비서를 호텔로 끌고 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고소 당한 가운데 호텔 로비에서 여비서의 탈출을 도왔다고 주장한 누리꾼의 목격담이 주목 받고 있다. (중략)

A씨는 “술을 엄청 먹이더니 러브샷을 하자고 했고 ○○과 ○○ 부분을 만지고 키스를 한 뒤 손가락지를 끼고 바로 옆에 있던 호텔로 끌고 갔다고 하더라”며 피해 여성의 주장을 전했다. (이하 생략)

### 2. 권고사항

언론은 성폭력 사건을 보도하면서 피해자의 피해상태,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 및 가족의 사생활, 가해자의 범행수법 등을 자세히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성추행 사건을 보도하면서 피해자가 성추행 피해를 입은 특정 신체 부위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였다. 이는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등 피해자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기사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심의기준 제4조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제 5 장 | 정신질환자 신원공개

### 사례. 12

의결번호	제2017-454호
매 체 명	플러스코리아타임즈
보도일시 및 위치	2017년 4월 17일자 지자체뉴스면
기사제목	영주경찰서 ○○자율방범대 치매노인 안전 귀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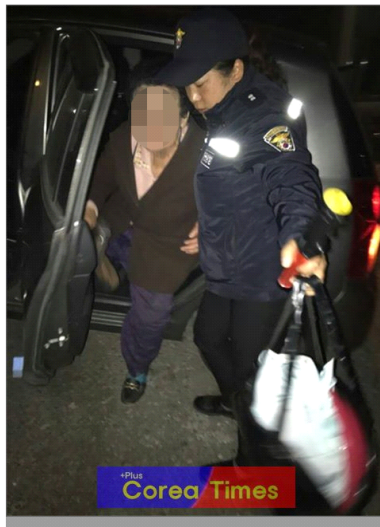
### 1. 보도내용

「영주경찰서 ○○자율방범대 치매노인 안전 귀가」 제하의 사진

영주경찰서 ■■■ 자율방범대 치매노인 안전 귀가  
 길 잃은 치매노인 가족의 품으로!

윤관성 기자 ☎

【플러스코리아타임즈= 윤관성 기자】영주경찰서(서장 김국선)에서는 4월 17일(월) 지난 11일 늦은 밤 길 잃은 80대 치매노인을 영주경찰서 ■■■ 자율방범대원이 발견하고 가족에게 안전하게 인계 해 귀감이 되고 있다.



※ 원 보도에는 모자이크 없이 게재되었으나, 법익침해 방지를 위해 모자이크 처리함

「영주경찰서(서장 김국선)에서는 4월 17일(월) 지난 11일 늦은 밤 길 잃은 80대 치매노인을 영주경찰서 ○○자율방범대원이 발견하고 가족에게 안전하게 인계 해 귀감이 되고 있다. (이하 생략)」

## 2. 권고사항

언론은 정신질환자에 관한 보도에서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내용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치매환자의 초상 및 연령대 등을 공개하여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다. 이는 정신질환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편견을 유발할 우려가 있어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9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제 6 장 | 북한이탈주민 신원공개

### 사례. 13

의결번호	제2017-455호
매 체 명	현장언론 민플러스
보도일시 및 위치	2017년 5월 23일자 민족면
기사제목	“○○야, 빨리 평양으로 돌아오렴”

### 1. 보도내용

「“○○야, 빨리 평양으로 돌아오렴”」 제하의 사진



▲ 지난해 4월8일 집단 입국한 북 해외식당 여종업원 [사진 CNN 갈무리]

※ 원 보도에는 모자이크 없이 게재되었으나, 법익침해 방지를 위해 모자이크 처리함

「(전략) 아울러 김씨는 지난해 총선 전 기획탈북 된 12명의 북 해외식당 여종업원들이 자신과 함께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전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 2. 권고사항

언론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도에서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내용을 공표 하여서는 아니 된다.

##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탈북한 북한 해외식당 여종업원의 초상을 공개하여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다. 이는 북한이탈주민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어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9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